

여성할당제 실시 1년을 되돌아본다

홍승하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1. 우리 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세계에서 최하위

플라톤은 『공화국(The Republic)』에서 이상적인 국가는 남성과 여성이 대체로 동등한 비율로 통치하는 국가로 보고 있다. 이렇듯 기원전 4세기에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최초로 참정권을 획득한 것은 불과 100년 전이었고, 우리 나라의 여성은 1948년에 와서야 보통선거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50년이 더 지난 오늘에도 여성의 정치적 권리는 오로지 통치받을 권리에만 머무르고 있다.

정치적 혹은 경제적 선진국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증가된 것은 불과 10여 년 전부터이다. 1980년대부터 여성주의자들은 주류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당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의사결정에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정치적 의제의 변화를 위한 압력을 가하는 여성들에 의해 정당들은 서서히 개혁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강령에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냈고, 새로운 후보선출제도, 정책 생산, 여성을 위한 부서 설립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당들은 여성의 압력과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정당간 경쟁을 야기하기도 하여, 다양한 적극적 조치와 차별화 전략이 제도화되었고 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확대는 가속화되었다. 1998년 현재 스웨덴의 여성의원 비율은 40.4%이며 북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4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여성의원 평균 비율은 13.1%(하원의원 평균)에 이르고 있다.

UNDP가 작성한 우리 나라 여성의 권한척도(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의 정책결정참여 척도)는 '97년도 세계 94개국 중 73위, 98년도 세계 102개국 중 83위, 99년도 174개국 중 78위'이며 IPU(국제의원연맹)가 집계한 우리 나라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79개국 중 95위(99.12)로,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세계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¹⁾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5대에는 299명 중 10명인 3.7%, 16대에는 273명 중 16명인 5.9%로 상승하였다. 16대 총선에서 여성비율이 높아진 것은, 정당법 개정을 통하여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명시하였고 지역구에서도 여성후보 공천수가 늘었기 때문이었다. 여성계에서는 전국구 순번 방식을 지퍼식으로 할 것과 당선권 내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할 것, 이를 당헌.당규로 명시할 것, 또한 이를 실행하지 않는 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과 전국구 공천의 분명한 선정기준과 원칙을 공개할 것,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천 절차 마련을 요구했고, 전국구 후보 공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심사위원 명단 공개, 그리고 심사위원 중 여성을 30% 이상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비례대표 30%여성할당제가 정당법으로 통과되었던 것이다.²⁾ 하지만 이렇게 하여 늘어난 여성의원의 비율 역시 세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1) 『99 여성특별위원회 백서』, p. 228

2) 조미리, 「16대 총선 결과로 본 여성 30% 할당 평가 및 과제」.

원들의 면면을 볼 때 15대에 비하여 16대에서는 여성운동 출신의 의원들이 일부 배출되기는 하였으나 소외된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획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 여성의 정치의식 고양과 투표참여도, 정당 참여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지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동당은 부르주아 정당이 펼치는 혼탁한 정치를 일소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위한 정치를 목적으로 진보진영의 오랜 소망과 투쟁으로 탄생한 정당이다. 우리 당의 ‘진보 정치’의 실현은 정치에서 소외된 모든 계층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고, 여성의 참여와 당 활동을 통한 정치적 대표성 획득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직후 16대 총선에서 21명의 후보를 내어 평균 13.1% 득표율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21명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우리 당의 근본 목표를 가시화시키지 못한, 진보정당으로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창당부터 당헌에 여성 30%를 명시한 성 평등 지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약한 기반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위로부터의 공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선출이라는 민주적 후보선출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에서 이번에 여성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결국 ‘준비된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 후보를 내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쳤다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록 여성 후보를 내지는 못했지만, 30% 할당제를 명시하는 과정과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당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성 평등 이념을 견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당내 성 평등의식은 아직도 충분히 고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나라 최초의 ‘할당제 당헌 명시’는 우리 당의 진보성을 입증하였으며 여성의 정치활동의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다.

2. 30%할당제 제정 과정과 의의

할당제는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불평등 조치이다. 많은 남성들이 우려하듯이 유능한 남성을 배제하고 무능한 여성을 기용할 가능성도 물론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의 정당들이 할당제를 채택하여 엄격히 지킴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모범이 있었다. 유엔은 1995년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3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이 권고에 따라야 하므로 여성발전기본법 제 15조 2항(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³⁾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방안은 모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도에 비해 극도로 낮은 정치적 대표성을 안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여성할당제의 긍정적 의미는 클 것이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에 30%여성할당제가 최초로 제안된 것은 1999년 6월 13일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2차 추진대회에서였다. 민주노총 소속 김진선 추진위원에 의해 제안되어 격론 끝에 만장

3) 여성개발원, 『선거구조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2000, p. 3.

일치로 통과되어 전체 운영위원 중 30%를 여성으로 할당하게 되었다.

추진위원회의 할당제 원칙을 바탕으로 이후 2000년 1월 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모든 임명직, 선출직’에 30%이상 할당을 명시하였다. ‘모든 선출직 대의기구’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이 수정동의안이 여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집행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구에 여성할당제의 정신이 실현되어야 하는 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2000년 2월 10일 1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정신에 입각하여 중앙위원,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 선출비율(각 지역지부에서 1명인 경우 미적용, 2명인 경우 여성 1명, 4명인 경우 1명, 7명인 경우 2명 이상, 전체 선출비율은 30% 이상) 30%이상 할당이 적용되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차 당대회 개정 전 당헌에서 전국집행위원회 구성을 ‘1. 대표, 2. 부대표, 3. 사무총장, 4. 권역별로 1인씩 선출한 집행위원, 5.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12인의 집행위원 중 여성집행위원으로 6인 이상 선출한다’라고 명시했던 것에도 전국집행위원 구성에서 여성 30%이상 할당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었다.

북유럽의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이미 50%이상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30% 이상 할당제는 출발에 불과한 것이다. 여성 정치 참여의 확산을 통해 그 이상의 할당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빠른 기간 내에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만큼 여성의 지위가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3. 2000년, 2001년의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 결과

2000년 중앙위원, 대의원 선거에서는 2월 10일 중앙위원회 원칙이 정해지기 전의 배정에 의해 선출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부에서 30% 할당제를 지켰고, 이후 보궐 선거에서 보완 선출하여 전체 비율은 30%이상이 지켜졌다.

2001년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에서는 배정부부터 여성할당제를 엄격하게 지켰고, 선출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30%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과반수 미달을 포함한 미선출 지역(용인, 강원영동, 춘천, 포항, 거제,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부 선거에서 30% 할당 배정이 이루어졌고, 선출에서도 중앙위원 32.8%, 대의원 34.1%로 할당 원칙이 충분히 반영됐다.

2001년 중앙위원 선출에서 여성 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어서 공석이 된 곳은 6개 지부(강남서초, 동대문중랑, 수원, 대전, 창원, 울산)였고, 강북성북 지부에서는 할당 배정보다 1명 더 여성을 선출하였다. 중앙위원 총 배정 수는 79명, 이 중 여성 배정 수는 26명인데, 남성 중 8명이, 여성 배정에서 4명이 선출되지 않아 공석 처리되었다.

2001년 대의원 선출에서는 8개 지부(고양, 인천, 충북, 경산, 창원, 울산, 부산, 전북)에서 할당 배정보다 적게 선출하였고, 6개 지부(강동송파, 강남서초, 관악동작, 경기동부, 의정부동두천, 대전)에서 배정보다 많이 선출하였다. 대의원 총 배정 수는 271명, 이 중 여성 배정이 91명인데, 남성 중 18명이 선출되지 않았고, 여성 배정에서 7명이 선출되지 않아 공석 처리되었다.

할당제 실시 후 두 번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할당제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배정된 인원을 모두 남성으로 선출하여 여성 배정 수만큼 사퇴처리한 지부도 있었다. 반면에 배정된 수보다

더 많은 여성이 선출된 지부가 늘어난 것은 할당제 원칙이 그만큼 정착해 가고 있고, 여성의 정치활동 기회의 확대를 통한 당활동 참여의 증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할당제를 실시해도 참여할 여성들이 있겠느냐’는 우려는 기우였음이 증명되었다.

(표1 참조)

4. 할당제 원칙이 ‘모든’ 부분에 적용되고 있는가?

. ‘모든’에는 지부의 임명직, 선출직도 포함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에는 현재 35개 지역조직, 300여개 분회가 구성되어 있다. 지역조직 구성에서 상임대표는 여성이 단 1명도 없고, 공동대표 중 여성이 3명 있을 뿐이다. 지부 사무처장, 사무국장 중에서도 여성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많은 지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대의원 구성 등에서 30%할당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생정당으로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대부분의 지역조직에서 집행단위까지 여성 30%할당이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 지부의 경우에는 1명 선출직을 제외한 모든 임명직, 선출직에 할당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4개 지회 중 3명의 지회장이 남성이고 1명이 여성이다. 남성 지회장인 경우 부지회장을 여성으로 선출하는데, 여성이 없으면 공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도 할당제 원칙을 고수하여 여성이 없는 경우 그 비율만큼 공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창원 지부의 경우 여성당원의 수가 적지만 분회장 선출 시 여성이 1명이라도 있으면 분회장을 여성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39개 분회 중 2명의 여성분회장을 탄생시켰다. 또한 분회장으로 채워지는 지부 대의원 비율에서 여성 30%를 지키기 위해 9명을 분회장이 아닌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모범을 삼을 만한 일이다. 창원 지부의 전체 당원 수 730명 중 여성 당원은 불과 64명이다. 10%가 안 되는 수인데 중앙위원 배정 2명 중 1명, 대의원 배정 6명 중 5명을 선출하였다. 전체 당원 수에 비해 여성 비율이 낮은 지역임에도 30%할당제에 거의 도달할 수 있었다. 전체 투표율이 61%인데, 여성의 투표율이 87%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 ‘모든’이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중앙당 당직자

우리 당은 부대표 5명 중 여성 2명을, 당대회 의장단 3인 중 1인을, 회계감사 3인 중 1인을 여성으로 선출하는 등 여성할당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간부인선과 당직자 인선에 있어서는 할당제가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중앙당 부문위원회 중 유일하게 여성위원장 1명과 여성부대표가 겸임하는 지자체특위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현직 위원장급 인선이 남성으로 되어 있다(정책위원장, 기획위원장, 중앙연수원장, 사무부총장, 당기위원장, 자주통일위원장, 조직강화특위위원장, 재창당추진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인권위원장).

중앙당 상근당직자(정책위원1, 부대변인1, 국장4, 부장13, 차장2) 중 국장직에는 여성이 1명도 없고 부장직 5명, 차장 1명이 여성이다.⁴⁾ 보수정당들의 여성 당직자의 비율도 직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 10-20% 수준이다. 당직자 비율을 볼 때 우리 당이 나올 것도 없는 현실이다. 중앙당 역시 인력난이 문제이고 여성당직자를 일부러 기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활동가를 배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 당은 모든 임명직, 선출직 30%할당을 당헌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차 중앙위원회에서 해석의 논란이 있었다. 전국집행위원회의 구성 중 1인 선출에 의해 당연직이 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었다. ‘모든 임명직, 선출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여지를 둘러싸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은 ‘현실 조건’을 이유로 할당제의 의미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할당제가 정착되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 노동당은 과거에 여성이 각급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위급 당직자를 비롯하여 선거구 지부 집행기관까지의 할당 비율을 당헌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⁵⁾

. 전국집행위원회 구성안의 의의와 한계

2001년 2차 당대회에서 전국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한 많은 논란과 논쟁 끝에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다. ‘1. 대표, 2. 부대표, 3. 사무총장, 4. 광역시도지부장, 5.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부문에서 1인씩 선출한 집행위원, 6.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9인의 집행위원, 7. 단, 6항의 9인 중 여성을 6인 이상으로 선출한다.’ 이 중 7항의 6명을 포함하여 현 부대표 2인, 여성위원장 1인을 합하면 9명이다.

이 중 7항의 선출방법은 우선 여성후보 중 경선을 통하여 6인을 선출하고, 경선에서 탈락한 여성후보와 남성후보들이 경쟁하여 나머지 3명을 뽑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6명 이상을 실질적으로 여성으로 선출하기 위한 모범적 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30%할당이 쉬운 일은 아니다. 8월 조직 개편 후 광역시도지부장이 10명 선출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구성은 33명이다. 그랬을 때 9명으로는 27%이다. 부문위원장 중 2명 이상을 더 임명해야 30%이상 할당이 지켜질 것이다.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다. 당장의 일은 아니라도, 광역시도지부가 모두 건설되는 경우 17명 중 여성이 얼마나 선출될지 하는 문제다. 현실 여건으로 보았을 때, 광역시도지부장에 여성이 선출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여성 광역시도지부장 배출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았을 때 또다시 당헌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당헌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 당헌에는 이전의 간부회의가 상무집행위원회로 명시되었다. 이 구성에 있어서도 할당제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현직 상무집행위원 중 여성은 단 3명(부대표2, 여성위원장1)이다. 전체 구성이 15명 정도가 된다면 최소 5명이 여성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영국 노동당은 7명의 주요 당직(의장, 사무총장, 회계감사, 2명의 부의장, 여성담당관, 청년담당관) 중 3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당직 선거방법을 구체적으로

4) 청년진보당은 중앙당 당직자 15명 중 여성이 8명이다.

5) 여성개발원,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방안』, 2000, p. 116-117.

명시하고 있다. 의장, 사무총장, 회계감사 순으로 선발하되 이 중 여성이 선발되지 않은 경우 부의장 중 1인이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며 부의장 1명만이 여성인 경우 아울러 청년담당관(여성담당관은 반드시 여성)도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의장 중 추천된 여성이 없을 경우 공식으로 두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⁶⁾

5.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

. 우리 당의 여성당원 비율은 19%

현재 민주노동당 여성 당원의 비율은 약 19%이다. 여.야 정당들의 여성당원 비율이 50%를 웃도는 것에 비해 훨씬 낮다.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고 헌신적인 활동에 의해 당이 유지되는 민주노동당의 최대 장점인 당원들의 높은 결함력이나 활동력을 고려할 때, 그 비율은 단순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는 ‘진보정당’인 우리 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정치의식의 성별 격차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이 81:19는 아닐 것이다. 우리 당의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 여건이 척박하고 특히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여성당원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여건만이 문제는 아니다.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가부장적 악습이 온존하고 있는 것은 여러 면에서 지적된 일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 당의 남성 당원들은 민주노동당 후보 선거 운동을, 그의 부인들은 타 정당(부르조아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음이 회자되었다.(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지만 들리는 소문은 없다.) 진보운동을 하는 남성들의 일부(과연 일부일까?)가 가부장성을 톡톡히 발휘하여 우리 당의 정당성, 평등 이념을 가족 내에서는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조직 또한 못하는 것이 사실인가보다.

창원지부에서는 간부의 경우는 무조건 부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여성당원 확대를 위한 결의가 있었다고 한다. 당대회에서 결의한 당원 배가운동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보자는 실사구시의 정신이 보여진다.

. 당내 여성활동가 배출 방안

2001년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에서 여성 배정 부분이 일부 공식으로 처리된 것은 대부분이 적합한 여성활동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감의 결여로 출마를 꺼린 것이 이유였다. 중앙위원을 할만한 충분한 능력과 책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중앙위원 출마를 고사하고 대의원에 출마한 여성활동가도 있었다. 또한 활동할 의사는 있으나, 자녀 양육 등 활동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출마하지 못한 활동가도 있다.

6) 이범준 외, 『21세기 정치와 여성』, 나남, p. 429

여성활동가가 주요 의결기구와 집행기관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내의 성 평등 문화 정착을 통하여 여성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발성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활동할 의지가 있더라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 또한 많다. 당 활동을 통하여 남녀 모두가 가정 내에서도 성 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여성활동가의 지도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중앙연수원을 비롯한 각급 교육 담당 기관과 주체는 여성활동가 육성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러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이 활동력을 발휘하여 정책입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 지역의 모든 기관에서 여성의 활동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할당제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고 남녀가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을 우선 기용하는 것을 통해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6. 남녀의 평등한 정치 참여를 위하여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98년 현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48.7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외형적인 평등권은 확보된 듯 보이지만 실제 여성의 지위는 공·사 모든 영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것은 여성이 정책결정과정과 정치활동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며, 사회적 인력의 효용을 높이고, 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남성과 동등한 대표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여성정책과 여성당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당원의 수를 5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철저한 실현과 여성 간부 육성 정책을 통해, ‘여성을 위한 정당’, ‘여성이 활동하는 정당’, ‘여성정치가가 배출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표1) 2000,2001 당대회 대의원(중앙위원) 선출결과 - 지역

권역	지부	당대회 대의원 선출 결과															
		대의원								중앙위원							
		배정 수		결과		여성배정		여성결과		배정 수		결과		여성배정		여성결과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서울	강동송파	4	3	4	3	1	1	2	1	1	1	1	1	0	0	0	0
	강남서초	5	5	5	5	2	2	3	2	2	2	1	1	1	1	0	0
	강북성북	12	10	12	10	4	3	5	3	4	3	4	3	1	1	2	1
	관악동작	8	8	8	8	3	3	3	3	2	2	2	2	1	1	1	1
	노원도봉	7	7	7	7	2	2	0	2	2	2	2	2	1	1	1	1
	동대문중랑	6	6	6	6	2	2	2	2	2	2	1	2	1	1	0	1
	서대문마포은평	8	7	8	7	3	2	3	3	2	2	2	2	1	1	1	1
	성동광진	7	8	7	8	2	3	2	3	2	3	2	3	1	1	1	1
	서울중부	8	7	8	7	3	2	3	2	2	2	2	2	1	1	1	1
	서울남부	6	6	6	6	2	2	2	2	2	2	2	2	1	1	1	1
	서울서부	8	7	8	7	3	2	3	2	2	2	2	2	1	1	1	1
	영등포	3	3	3	3	1	1	1	1	1	1	1	1	0	0	0	0
경기	고양	5	4	4	4	2	1	1	1	1	1	1	1	0	0	0	0
	구리남양주	2		2		1		1		1		1		0		0	
	경기동부	20	24	19	24	7	8	7	8	6	8	6	8	2	3	2	3
	수원	5	8	5	7	2	3	2	3	2	3	1	3	1	1	0	1
	안산시흥	6	7	6	7	2	2	2	2	2	2	2	2	1	1	1	1
	안양군포의왕과천	8	7	8	7	3	2	3	2	2	2	2	2	1	1	1	1
	의정부동두천	3	2	3	2	1	1	2	2	1	1	1	1	0	0	0	0
	평택	3		3		1		1		1		1		0		0	
	용인	4	3	0	3	1	1	0	1	1	1	0	1	0	0	0	0
강원	영동	2	3	0	2	1	1	0	0	1	1	0	0	0	0	0	0
	춘천	1		0		0		0		0		0		0		0	
	원주	1		1		0		0		0		0		0		0	2
인천	인천	14	12	13	12	5	4	4	4	4	4	4	4	1	1	1	0
대전	대전	7	5	6	5	2	2	3	2	2	1	1	1	1	0	0	0
충남	충남	3	2	0	2	1	1	0	1	1	1	0	1	0	0	0	0
충북	충북	5	4	3	4	2	1	0	1	1	1	1	1	0	0	0	1
대구	대구	9	6	9	6	3	2	3	2	3	2	2	2	1	1	1	0
경북	경산	2	1	1	1	1	0	0	0	0	0	0	0	0	0	0	0
	구미	1	1	1	1	0	0	0	0	0	0	0	0	0	0	0	
	경주	1		1		0		0		0		0		0		0	
	포항	0		0		0		0		0		0		0		0	
경남	창원	19		15		6		5		6		5		2		1	
	마산	4		4		1		1		1		1		0		0	
	진주	6	2	6	2	2	1	2	1	2	1	2	1	1	0	1	0
	거제	2		0		1		0		1		0		0		0	
울산	울산	26		25		9		8		8		6		3		2	
부산	부산	15		14		5	4	4	4	4		4		1	1	1	1
광주	광주	9	11	9	11	3		3		3	3	3	3	1		1	
전북	전북	4		3		1		0		1		1		0		1	
전남	여수	1		1		0		0		0		0		0		0	
제주	제주	1		1		0		0		0		0		0		0	
총		271		246		91		84	33.1%	79		67		26		22	34.3%
																(32.8%)	

* 2000년 선출결과에서 미확인 지역과 배정표와 대의원, 중앙위원 수가 틀린 경우 통계에서 제외하였다.